

1. 개정이유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항공기 조난사고 시 육상의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역할을 현실화하는 등 업무범위를 재정립 하고자 함
- 나.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본 규정의 안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으로 변경
- 나. 본 규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용어 삭제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안 제3조)
- 다.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변경(안 5조, 제8조)
- 라.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의 조직과 임무를 소방의 권한 내 임무로 명확히 함(안 제2장 조직 및 임무)
- 마. 소방청 권한 밖인 경보소 지정 및 경보소 임무를 삭제(안 제10조, 11조)
- 바. 그 간 발전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한 수색·구조 업무 절차를 재정립 하고, 소방 권한 외 업무 삭제(안 제3장 수색·구조 절차)
- 사. 교육훈련 중 안전감독 교육을 삭제하고 수색·구조업무 종사자별

교육훈련으로 구분하고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 하
도록 수정(안 제4장 교육훈련 및 안전감독)

아. 수색·구조업무의 능력향상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훈련 방
법으로 수정(안 제47조)

차.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ICAO 부속서12(수색·구조)의 매뉴얼 준수를
위해 안전감독관과 관련된 사항 본 규정에서 삭제하고, 안전감독
에 관한 규칙 제정하고 이를 따른다는 조항 신설 (안 제51조의 2)

차. 국내 법령과 국제기준의 차이점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기
위한 절차 신설(안 제55조의2)

카. 전부개정에 따른 별표·별지 수정 및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번호수정 :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번호 재배치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을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제3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제8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2호) 중 "기관"을 "조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3호의2)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로, "(항공교통센터)을 말한다"를 "(항공교통본부)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8호) 중 "구조조정본부가 조난에 처한"을 "조난을 당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사고 항공기를 수색·구조하기"를 "수색·구조업무를"로, "인력으로 구성되고, 수색·구조 활동의 신속한 수행에"를 "인력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규정한 장비를 탑재하고, 수색·구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을 "효율적인 수색·구조업무를 위한 적합한 특수장비를 갖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수색 및 구조 서비스"를 "수색·구조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위성조난통신시스템'이란"을 "'위성조난시스템'이란"으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상황실)"을 "해양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조난사고(Distress Accident)"란 항공기가 불시착 및 추락 등으로 위험에 처해 구조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구조(Rescue)"란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1호를 말한다.
4. "수색·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란 항공기, 선박, 기타시설을 포함한 공공 및 개인 자원을 사용하여 수색·구조, 응급 의료 지원, 후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란 우리나라 육상에서

항공기 조난사고 시 수색·구조업무를 조정하는 조직을 말한다.

9. "경보소(Alerting Post)"란 실종 또는 조난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획득을 위해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17. "수색·구조 단말기"란 위성조난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20.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 경보상황(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istress phase)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하여, 세부내용은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를 따른다.

제4조 앞의 "**제1절 구조조정본부**"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구조조정본부의 설치)**"를 "**(구조조정본부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로,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수색·구조업무를 국제적인 협력을**"을 "**수색·구조업무를 위해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조조정본부의 조직) 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장이 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상상황**"을 "**항공기**"

비상상황"으로, "비상단계를 선포하고, 비상단계별"을 "상황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항공 수색·구조 지원센터와"를 "ASAC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항공교통업무기관"을 "ASAC"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7. 수색·구조업무의 중단 및 재개 사항 접수 및 전파

9. 수색·구조단말기 검색 및 조난신호 확인

10. 비상상황 발생관련 기록유지

제7조 앞의 "제2절 지역구조조정본부"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설치)"를 "(지역구조조정본부의 구성)"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색·구조구역 내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지원하고, 해당 관할 지역 내에서 수색·구조업무를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의 소방본부를 지역구조조정본부로 지정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조직) 지역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은 시·도 119종합상황실장이 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상단계 발령 시 즉시"를 "비상상황 접수 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적극 협조"를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4. 비상상황 발생관련 기록유지

제2장제3절(제10조 및 제11조)을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2조 및 제13조)을 삭제한다.

제14조 앞의 "제3장 수색·구조조정 업무"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의 "제2절 수색·구조 업무"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수색·구조 운영 절차

제19조를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9조) 제1항 중 "수색·구조지원업무"를 "수색·구조 업무"로, "하며, 운영절차는 별표 6 수색·구조업무흐름도와 같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를 "구조조정본부에"로, "능숙하여야 하고, 수색·구조업무수행이 가능한 별표 7의 자격을 갖추어야"를 "능숙 하고, 수색·구조업무 수행이 가능한 별표 1의 자격을 갖춘자를 두어야"로 한다.

제6조의2(중전의 제19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접적으로 연락"을 "연락"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 수색·구조지원센터"를 "ASAC"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항

공우주작전본부(KAOC) 공수구조과"를 "중앙방공관제소(MCRC)"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항공작전사령부 상황실"을 "항공사령부 지휘통제실"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련기관 및 수색·구조시설"을 "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19조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해양경찰청(상황실)

5. 수색·구조와 관련된 법령,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

제19조(제6조의2로 이동)

제6조의3(수색·구조단말기 운용) ① 구조조정본부는 육상에서의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수신 및 분석하기 위하여 수색·구조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수색·구조단말기가 점검 및 정비 등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협조하여 신속한 경보 접수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색·구조단말기에서 조난신호를 식별하게 되면 수신지역 및 조난신호를 발신한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ASAC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한다.

④ 구조조정본부장은 별표 2의 위성조난신호 처리 기준에 따라 별지 1호 서식의 위성조난신호 수신 및 처리 실적 통계를 관리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색·구조 체계) 항공기 조난사고 시 수색·구조 체계는 별 표 3과 같다

제20조의 제목 "(항공기 사고정보 입수 시 조치절차)"를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입수 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고정보"를 "조난사고 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1호) 중 "사고"를 "조난사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기사고"를 "항공기 조난사고"로, "활동범위와 선포할 비상단계"를 "활동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관"을 "ASAC, 정보소"로 한다.

1. 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수신한 비상상황 정보
2. ASAC, 정보소로부터 수신한 비상상황 정보
4. 119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비상상황 판단) 구조조정본부는 제20조제2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입수 시 비상상황을 판단하고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제22조(비상상황별 조치) 구조조정본부는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비상상황 접수 및 제21조에 따른 비상상황 판단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상황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 : ASAC, 경보소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2. 경보상황 :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수색구조대에 관련정보 제공 및 출동준비 등의 필요한 조치
3. 조난상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수색·구조업무 실시

나. ASAC, 해양경찰청 상황실, 지역구조조정본부에 비상상황 통보
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

제23조 중 "**본부장**"을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사고의 경우 제27조**"를 "**조난사고의 경우 제7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정보제공) 구조조정본부는 수색·구조업무 정보가 조난사고에 처한 항공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항공기와 통신이 가능한 ASAC 또는 경보소에 필요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수색·구조업무 종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 제10항을 적용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항공기의 추락·실종 등"을 "항공기 조난사고 신고"로, "사고 지역 관할"을 "관할"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유관기관 간 협조) 수색·구조 업무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를 적용한다.

제30조의 제목 "(수색·구조대)"를 "(수색·구조대 편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항공기 조난사고 발생시 수색·구조대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 편성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한다.

제31조의 제목 "(수색·구조항공기)"를 "(수색·구조항공기 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긴급구조기관의"를 "수색·구조"로, "사고항공기"를 "조난사고 항공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업무"로, "별표 9 및 별표 10"을 "별표 4 및 별표 5"로 한다.

제32조 앞의 "제3절 수색·구조지원 업무"를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수색·구조 자원)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를 운용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목 외의 부

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3항) 중 "별표 8"을 "별표 6"으로, "주파수(수색·구조주파수)"를 "주파수"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신호방법(국제신호규약)을"을 "신호를"로, "별표 12"를 "별표 7"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1조의2)을 삭제한다.

제42조 앞의 "제5장 교육훈련"을 삭제한다.

제42조 앞의 "제1절 직무교육훈련"을 삭제한다.

제4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교육훈련 및 안전감독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교육대상 및 내용) 수색·구조업무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RCC 및 RSC 담당자 : 수색·구조업무의 초기대응에 대한 직무교육
2. 수색·구조대 : 현장에서 수색·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대원에 대한 직무교육
3. 수색·구조 항공기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구조)의 수색구조 비상통신, 수색·구조 신호, 수색구조 방법에 대한 교육

제43조(교육계획 및 방법) ① 제42조의 제1호의 직무교육은 별표 8에 따

라 수립 하며, 제2호 및 제3호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교육방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 앞의 "제2절 수색·구조훈련"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을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로, "교육훈련"을 "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본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을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으로 한다.

4. 수색·구조 대비 훈련

제48조제1항 중 "사고에 대비한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의 직무기술서에 규정된"을 "조난사고 시"로, "임무수행여부를 확인하기"를 "임무를 숙지하기"로, "통신망에 의하여 실시한다"를 "통신망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2 중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는 항공기 사고에 대비하여 관할 지역을 숙지하고, 항공기 수색·구조절차"를 "관할 지역 및 항공기 수색·구조 절차"로, "임무조정관 또는 임무담당관의 통제 하 반기"를 "반기"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하고,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49조(중전의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항공기 사고수습훈련) 공항에서 실시하는 항공기 사고수습 대비 훈련과 연계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수색·구조 대비 훈련) 항공기 조난사고에 대비한 수색·구조 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제49조 및 중앙 및 시·도 본부의 항공사고 관련 훈련에 참여 시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평가)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유지한다.

제4장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안전감독 및 평가) ① 구조조정본부의 안전감독은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을 따른다

②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조조정본부장이 정한다.

③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에 대한 평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은 ICAO 국제평가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5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국가 간 협조

제52조 앞의 "제6장 국가 간 협조"를 삭제한다.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본부장"을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수색·구조지원업무"를 "수색·구조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청장"을 "구조조정본부장"으로 한다.

제5장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국제기준 차이점 통보) 국제기준과 국내규정 간의 내용·성격 등 서로 다른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5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56조 앞의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을 "법령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9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
6.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해양경찰청훈령)
7.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7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 · 구조 운영규정</u>	<u>육상 항공기 수색 · 구조 계획</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 항공협약 및 항행분야 의정서 (수색 · 구조 프로토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에 따 라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수색 · 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 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 · 구 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 · 구 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 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 구조업 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육상 에서의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수 색 ·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에서 정한 “긴급구조기관” 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적용한 다.	<삭 제>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 ---

1.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육상에서의 수색·구조조정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구조조정본부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통보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역구조조정본부(Rescue Subcenter)”란 수색·구조구역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National SAR Coordinating Committee)”란 우리나라 수색·구조 구역내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육상 및 해상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협의회를 말한다.

3의2.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 : ASAC)(이하“ASAC)”란 「항공안전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 “조난사고(Distress Accident)”란 항공기가 불시착 및 추락 등으로 위험에 처해 구조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6. -----
-- 조직-----

3. “구조(Rescue)”란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1호를 말한다.

8. -----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항공교통본부)을 말한다.

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항공교통센터)을 말한다.

4. “경보소(Alerting Post)”란 항공종사자 등으로부터 비상상황의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구조조정본부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안전감독관”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의하여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의 운영 및 직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수색·구조를 위한 수색·구조대의 구조기술능력을 확인하도록 소방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임무조정관”이란 구조조정본부의 운영과 수색·구조 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 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조정본부장이 임명한 공무원

4. “수색·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란 항공기, 선박, 기타시설을 포함한 공공 및 개인 자원을 사용하여 수색·구조, 응급 의료 지원, 후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란 우리나라 육상에서 항공기 조난사고 시 수색·구조업무를 조정하는 조직을 말한다.

<삭 제>

원을 말한다.

7. “임무담당관”이란 지역구조
조정본부의 운영 및 직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한 감독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장이 임명한 공무원
을 말한다.

8. “수색(Search)”이란 구조조
정본부가 조난에 처한 항공기
및 사람의 위치파악을 목적으
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구조(Rescue)”란 조난에 처
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의료
지원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
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후송하는 활동을 말한다.

10. “수색·구조업무(Search an
d Rescue Service)”란 항공기,
선박, 인원 및 기타 이동수단
및 시설을 포함한 공공 및 개
인 자원을 사용하여 조난감시,
통신, 조정 및 수색·구조 기
능, 응급 의료 지원 또는 후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2. -----
-- 조난을 당한 ---.

9. “경보소(Alerting Post)”란
실종 또는 조난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획득을 위해 「항
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
(항공교통본부고시)에서 지정
한 시설을 말한다.

<삭 제>

11. “수색·구조시설(Search and Rescue Facility)”이란 수색·구조기관을 포함하여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12. “수색·구조대(Search and rescue unit)”란 사고 항공기를 수색·구조하기 위하여 훈련된 인력으로 구성되고, 수색·구조 활동의 신속한 수행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조직을 말한다.

13. “수색·구조항공기(Search and rescue aircraft)”란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규정한 장비를 탑재하고, 수색·구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14. “수색·구조구역(Search and Rescue Region)”이란 수색 및 구조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정한 범위의 구역으로 구조조정본부에서 지정한다.

15.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가 제공되

<삭 제>

12. -----
----- 수색·구조업
무를 -----
-- 인력과 -----

-----.

13. -----
----- 효율
적인 수색·구조업무를 위한
적합한 특수장비를 갖춘 -----

-----.

14. -----
----- 수색
· 구조업무-----

-----.

<삭 제>

는 일정한 범위의 공역으로
이 규정에서는 인천비행정보
구역을 말한다.

16. “위성조난통신시스템”이란
LUT(Local User Terminal)
및 MCC(Mission Control Ce
nter) 시스템 등을 갖추고 위
성을 통한 조난신호를 수신
및 처리, 전파하기 위해 해양
경찰청(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을 말
한다.

17. “위성수색·구조단말기”란
항공기로부터 조난신호 발생
시 코스파스(COSPAS) 및 살
세트(SARSAT)위성에 의해
탐지된 조난신호를 위성조난
통신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하는
단말장치를 말한다.

18. “항공고정통신망(Aeronauti
cal Fixed Telecommunication
s Network)”이란 항공항행의
안전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공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
지국 사이의 전문 및 디지털
자료교환을 위하여 제공되는

16. “위성조난시스템”이란 -----

----- 해양
경찰청-----

--.

17. “수색·구조 단말기”란 위
성조난시스템을 사용하기 위
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삭 제>

항공고정회선들의 전 세계적인 통신망을 말한다.

19. “항공교통업무기관”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교통질서 확보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및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에서 항공교통관제, 비행정보, 경보업무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0.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항공기의 실종, 사고 및 안전의 우려가 있거나, 조난신호의 수신 또는 레이더 전시면에서의 실종 등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을 말하며, 불확실단계, 경보단계, 조난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한다.

21. “불확실단계(Uncertainty phase)”란 항공기와 항공기탑승자의 안전이 불확실한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삭 제>

20.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 경보상황(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istress phase)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하여, 세부내용은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를 따른다.

<삭 제>

연락이 없을 경우

나.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
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
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
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
이 의심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한다.

22. “경보단계(Alert phase)”란
항공기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이 염려되는 다음 각 목
의 상황을 말한다.

가. 불확실단계에서의 항공기
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
부서의 조회로도 그 항공
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
란한 경우

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
고도 착륙예정시간으로부
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
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

<삭 제>

실되었거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항공기가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23. “조난단계(Distress phase)”

란 항공기 및 항공기 탑승자가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에 처해 있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확실시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정보단계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부서와의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

<삭 제>

<u>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u> <u>보가 입수되는 경우</u> <u>라.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u> <u>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u> <u>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u> <u>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u> <u>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u> <u>위험에 있지 아니하며, 긴</u> <u>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u> <u>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u> <u>있는 경우를 제외한다.</u>	
24. “수면불시착(Ditching)”이란 <u>항공기가 수면 위에 강제로</u> <u>불시착하는 것을 말한다.</u>	<삭 제>
25. “기장(Pilot-in-command)” <u>이란 비행안전에 대한 통제와</u> <u>책임을 지는 항공기 소유자</u> <u>또는 운영자에 의해서 지정된</u> <u>조종사를 말한다.</u>	<삭 제>
26. “운영자(Operator)”란 항공 <u>기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 단</u> <u>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u>	<삭 제>
27. “등록국”이란 항공기가 등 <u>록된 국가를 말한다.</u>	<삭 제>
28.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u>설비(Emergency Locator Tra</u>	<삭 제>

nsmmitter, 이하 ELT)”란 항공
기의 조난 시 수색과 구조작
업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조난위치 등을 자동으로 통보
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29.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
CAO”) 국제기준“이란 국제민
간항공협약, 동 조약 부속서에
서 규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
사항(Standards and Recomm
ended Practices, SARPs) 등
으로 국제민간항공조약 체결
국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말한다.

30. “항공구조대응시스템”이란
조난 또는 사고 항공기에 대
한 정보수집 및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위하여 설치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1절 구조조정본부

제4조(구조조정본부의 설치)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육상에서의 항
공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
율적인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
하고, 수색·구조업무의 국제적
인 협력을 위하여 소방청에 구

<삭 제>

<삭 제>

<삭 제>

제4조(구조조정본부의 구성) 육상
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

----- 수색·구조업무를 위해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
파, 상황관리, 현장지휘 및 조정

조조정본부를 둔다.	· 통제 등의 업무를 ----- -----.
제5조(구조조정본부의 조직) ① 구조조정본부에는 수색·구조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본 부장 및 임무조정관 각 1명과 임무담당자 몇 명을 둔다.	제5조(구조조정본부의 조직) 구조 조정본부의 본부장은 119종합 상황실장이 된다.
② 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청장 이 되고, 임무조정관 및 임무담 당자는 소방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6조(구조조정본부의 임무) ① 구조조정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구조조정본부의 임무) ① - ----- -----.
1. 수색·구조 구역 내의 수색 · 구조운영계획 수립	<삭 제>
2.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단계 를 선포하고, 비상단계별 조치	2. 항공기 비상상황 ----- ----- 상황별 - --
3. 항공기의 항적을 추적하여 수색·구조구역을 해당 지역 구조조정본부에 통보	<삭 제>
4. 지역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수 색·구조업무 조정 및 통제	4. 수색·구조업무 ----- -----
5. 항공 수색·구조 지원센터와	5. ASAC과 -----

수색·구조업무 및 사고지역
공역통제, 항공고시보 발행요
청 등에 관한 사항 협의

6. 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
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7. 수색·구조 활동의 중단 및
재개의 최종결정

8. 수색·구조업무 관련 외국
구조조정본부와 협조

<신 설>

<신 설>

② 임무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표 1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본부장의 지시받아 구조조정
본부 운영 및 관리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
원기관과 수색·구조업무 조
정 및 협의

3. 위성수색·구조단말기의 조
난신호 확인

4.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단계
를 검토하여 선포 건의

5. 구조조정본부의 인적요인(H

6. ASAC -----

7. 수색·구조업무의 중단 및
재개 사항 접수 및 전파

<삭 제>

9. 수색·구조단말기 검색 및
조난신호 확인

10. 비상상황 발생관련 기록유
지

<삭 제>

uman Factor) 운용

6. 수색·구조지원 운영절차에
대한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7. 임무담당자의 직무교육 실시

③ 임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표 2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임무조정관의 지시받아 상황
관리

2. 위성수색·구조단말기 검색
및 조난신호 확인

3. 비상상황 발생 시 임무조정
관에게 보고

4.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
자와 업무 협의

5. 직무교육(OJT) 실시

6. 장비 및 비품관리 업무

7. 비상상황발생관련 기록유지

8. 그 밖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특이사항 보고

제2절 지역구조조정본부

제7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설치)
수색·구조구역 내에서 구조조
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지
원하고, 해당 관할 지역 내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위하여 다음

<삭 제>

<삭 제>

제7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구성)
수색·구조구역 내에서 구조조
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지
원하고, 해당 관할 지역 내에서
수색·구조업무를 위하여 소방

각 호의 기관을 지역구조조정본부로 지정하며, 각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경보소의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창원 소방본부

2.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소방본부

제8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조직)

① 지역구조조정본부에는 수색·구조지원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부장 및 임무담당관 각 1명과 임무담당자 몇 명을 둔다.

② 지역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은 시·도 소방본부장이 되고, 임무담당관과 임무담당자는 시·도 소방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9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임무)

①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색·구조 구역 내 수색·

기본법 제3조제4항의 소방본부를 지역구조조정본부로 지정한다.

<삭 제>

<삭 제>

제8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조직)

지역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은 시·도 119종합상황실장이 된다.

제9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임무)

①-----
-----.

<삭 제>

구조운영계획 수립

2. 비상단계 발령 시 즉시 관할
경보소에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결과를 구조
조정본부에 통보

3. (생략)

<신 설>

4. 그 밖에 구조조정본부의 요
구사항에 적극 협조

② 임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표 1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시·도 소방본부장의 지시받
아 지역구조조정본부 운영 및
관리

2. 비상단계 발령 시 수색·구
조항공기 및 수색·구조대를
지정하고, 수색·구조구역 내
에서의 수색범위를 조정하는
등 비상 단계별 조치

3. 수색·구조 관련기관과 수색
·구조업무 협의

4. 임무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5.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인적요
인(Human Factor) 운용

6. 수색·구조지원 운영절차에

2. 비상상황 접수 시 -----

3. (현행과 같음)

4. 비상상황 발생관련 기록유지

5. -----

-- 협조

<삭 제>

대한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③ 임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표 2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임무담당관의 지시받아 상황
관리

2. 비상상황 발생 시 임무담당
관에게 보고

3. 직무교육(OJT) 실시

4. 장비 및 비품관리 업무

5. 비상상황발생관련 기록유지

6. 그 밖에 업무수행 중 발생한
특이사항 보고

제3절 경보소

제10조(경보소) ① 본부장은 사고
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획득
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경보소로
지정한다.

1. 대구 및 인천지역관제소(AC
C), 대구 및 인천비행정보실
(FIC), 서울·제주·김해 접근
관제소, 울산·여수·울진 도
착관제석

2. 인천·김포·제주·양양·여
수·울산·무안·울진·정석

<삭 제>

<삭 제>

<삭 제>

비행장 관제탑 및 항공정보실

3. 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 군 접근관제소

4. 광주 · 군산 · 김해 · 대구 · 목

포 · 사천 · 예천 · 원주 · 청주

· 포항 · 해미 · 중원 · 강릉 ·

수원 · 이천 · 논산 비행장 관

제탑(비행정보실)

② 본부장은 경보소를 추가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경보소의 임무) 경보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신속히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인접 경보소 또는

인접 관제기관을 통하여 사고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

2. 사고항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획득 시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구조조정본부의 수

색 · 구조지원업무에 적극 협

조

3. 사고항공기의 위치파악을 위

하여 관할 구역을 운항중인

<삭 제>

항공기에 상황을 전파

제4절 안전감독관

제12조(안전감독관) ① 구조조정

본부와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운영실태 및 규정과 절차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안전감독관을 둔다.

② 안전감독관은 1명의 선임안전감독관과 2명 이상의 안전감독관으로 구성하며, 안전감독관은 별표 4의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을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③ 안전감독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42조제1호의 기본교육과 전임 안전감독관으로부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안전감독관의 인력산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13조(안전감독관의 임무) ① 선임안전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감독관의 지휘·감독
2. 감독계획 수립 및 수색·구조업무에 대한 평가항목 점검

<삭 제>

<삭 제>

<삭 제>

3. 안전감독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② 안전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 본부의 운영실태와 관련 공무원의 규정 및 절차 준수사항 확인

2. 수색·구조업무에 대한 각종 규정, 관리절차 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3.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 본부 및 수색·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확인 및 운영 평가

4. 평가결과 보고 및 관계기관 통보

5.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조치 이행사항의 주기적 확인 및 추가조치 필요성 판정

③ 안전감독관은 별표 5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수색·구조조정 업무

제1절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영

제14조(위성수색·구조단말기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치)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감시하고, 수색·구조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구조조정 본부에 위성수색·구조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5조(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

<삭 제>

영) ①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상시 가동체제유지를 위하여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장비의 유지관리는 본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위성수색·구조단말기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기 점검 및 정비 등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협조하여 신속한 정보접수체제를 유지하여야 하고, 가동되지 않은 사유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ELT를 임의로 작동하여서는 안되며 정비 및 시험운영 목적으로 ELT를 작동 할 경우 시험운영시간을 구조조정본부 및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식별 및 조치절차) ① 위

<삭 제>

성수색·구조단말기의 전시 면
에서 조난신호를 식별하게 되면
발생지역을 확인하여 즉시 임무
조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난신호 발생상황을 해양경
찰청 상황실과 항공교통업무기
관에 통보하여 항공기 이상 유
무를 확인하고, 해당지역구조조
정보본부에 출동관제시스템으로
통보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한
다. 다만, 긴박한 상황일 경우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구조조정본부는 사고사실을
신속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항공
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 등의
정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접수
된 정보를 검토하여 분석한다.

제17조(기록유지) 항공기 조난 신
호 등 발생한 상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육하원칙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조난신호 수신처리 구분기
준은 별표 16호와 같다.

제2절 수색·구조 업무

<신 설>

제18조(수색·구조운영계획의 수

<삭 제>

<삭 제>

제3장 수색·구조 운영 절차

<삭 제>

립) ① 소방청장(구조조정본부)
은 수색·구조조정업무 운영절
차 등을 포함한 수색·구조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조정본부
· 지역구조조정본부와 경보소
그리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
보하여야 하며, 동 규정의 변경
시에도 그러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색·구조운
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
관과 충분한 협의를 가져야 하
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수색·구조구역 내의 수색·
구조활동 수행방법
2. 가용 통신체계 및 시설의 활
용
3. 운항중인 항공기에 대한 경
고방법
4. 민·관·군의 수색·구조에
참가한 대원의 임무 및 권한
5. 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정
보의 취득 및 활용방법
6. 추락위치에 따른 사고항공기
구조 및 지원방법
7. 불법침입 항공기에 대한 관

계기관 협조

8. 수색·구조 장비에 대한 정비 및 연료보급 등 지원대책 등

<신 설>

<신 설>

제19조(구조조정본부의 운영) ①

구조조정본부는 효율적인 수색·구조지원업무를 위하여 24시간 운영 하여야 하며, 운영절차는 별표 6 수색·구조업무흐름도와 같다.

②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는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및 영어에 능숙하여야 하고, 수색·구조업무수행이 가능한 별표 7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구조조정본부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의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 수단

가. 지역구조조정본부, 항공

제18조의2(수색·구조 체계) 항공기 조난사고 시 수색·구조 체계는 별표 3과 같다

제19조(제6조의2로 이동)

제6조의2(구조조정본부의 운영)

① ----- 수색·구조 업무----- 한다.

② 구조조정본부에-----

---- 능숙 하고, 수색·구조업무 수행이 가능한 별표 1의 자격을 갖춘자를 두어야 --.

③ -----

-----.

1. ----- 연락-----

--

가. ----- ASAC

<u>수색·구조지원센터, 정보소</u>	----- -
<u>나. 항공교통업무기관</u>	<u>나. 해양경찰청(상황실)</u>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공군 <u>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공수구조과</u>	라. -- <u>중앙방공관제소(MCRC)</u>
마. 육군 <u>항공작전사령부 상황실</u>	마. -- <u>항공사령부 지휘통제실</u>
바.·사. (생략)	바.·사. (현행과 같음)
<u>아. 인접국 구조조정본부</u>	<u><삭제></u>
2. <u>항공고정통신망, 녹음이 되는 전화기</u>	<u><삭제></u>
3. <u>수색·구조구역과 수색·구조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대축척 지도</u>	<u><삭제></u>
4. <u>수색·구조 관련기관 및 수색·구조시설의 최신 연락처 및 필요한 정보</u>	4. ----- <u>관련기관</u> ----- ----- -----
5. <u>수색·구조와 관련된 법령, 문서, 지침, 양식, 국제민간항공조약 협약서 및 부속서 12</u>	5. <u>수색·구조와 관련된 법령,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u>
6. <u>항공기 위치파악 및 무선통신을 위한 공지무선망</u>	<u><삭제></u>
④ <u>지역구조조정본부의 운영사항은 시·도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u>	<u><삭제></u>

<신 설>

제20조(항공기 사고정보 입수 시 조치절차) ①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이
유가 있는 정보를 가진 자는 구

제6조의3(수색·구조단말기 운용)

① 구조조정본부는 육상에서의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수신 및
분석하기 위하여 수색·구조단
말기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수색·구조단말기가 점검 및
정비 등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
우에는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협
조하여 신속한 경보 접수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색·구조단말기에서 조난
신호를 식별하게 되면 수신지역
및 조난신호를 발신한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ASAC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한
다.

④ 구조조정본부장은 별표 2의
위성조난신호 처리 기준에 따라
별지 1호 서식의 위성조난신호
수신 및 처리 실적 통계를 관리
한다.

제20조(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입
수 시 조치) <삭 제>

구조조정본부에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② 구조조정본부에서 접수되는
항공기 사고정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신 설>

1. 위성수색·구조단말기로부터
조난신호를 수신하여 항공기
사고가 의심되는 정보

2. 해양경찰청 상황실와 항공수
색·구조지원센터, 정보소, 그
리고 지역구조조정본부로부터
수신한 사고신고

3. 소방상황실에서 수보한 항공
기 사고 정보

4.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접수된
수색·구조목적의 비행계획서
정보

5.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의 수색
· 구조 활동정보

③ 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정
보를 접수한 구조조정본부는 접
수 즉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평가하고, 요구되는 활
동범위와 선포할 비상단계를 검

② -----
---- 조난사고 정보-----
-----.

1. 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수
신한 비상상황 정보

3. -----
-- 조난사고-----

2. ASAC, 정보소로부터 수신한
비상상황 정보

<삭 제>

4. 119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삭 제>

③ ----- 항공기 조난사
고 -----

----- 활
동범위-----

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관에 항공기 이상 유무를 확인

4. (생략)

제21조(비상단계 선포) ① 본부장
은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했다
는 정보를 접수한 때에는 상황
에 따른 비상단계를 결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② 비상단계를 선포한 경우 제2
7조에 따른 수색·구조구역별
해당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수색·구조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단계를 선포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유지 한다.

제22조(비상단계별 조치) 구조조
정본부는 제21조에 따라 비상단
계를 선포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단계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불확실단계

-----.

1. · 2. (현행과 같음)

3. ASAC, 정보소-----

--

4. (현행과 같음)

제21조(비상상황 판단) 구조조정
본부는 제20조제2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입수 시 비상상황을 판단
하고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조
치를 수행해야 한다.

제22조(비상상황별 조치) 구조조
정본부는 항공기 수색·구조 지
원계획(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비상상황 접수 및 제21조에 따
른 비상상황 판단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상황별 조치를

가.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경보소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불확실단계가 선포되었음을 통보하고, 비상상황에 처해 있는 항공기의 정보를 수집한다.

나. 사고항공기에 대하여 별

표 8 비상용 공지통신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수색을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요청하고, 교신결과를 수신한다.

다. 항공기의 비행계획서의

계획된 항로와 실제항로, 무전교신기록, 목격정보, 통신수색결과,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정보를 분석·평가한다.

라. 사고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는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마. 항공기 안전에 염려되는

경우에는 경보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수색이나 다른 정보로부터

수행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 : ASAC, 경보소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2. 경보상황 :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수색구조대에 관련정보 제

공 및 출동준비 등의 필요한

조치

3. 조난상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51조, 제52조에 따

라 수색·구조업무 실시

나. ASAC, 해양경찰청 상황

실, 지역구조조정본부에

비상상황 통보

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 항공

·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

항공기가 사고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상황을 종료하고 관련기관에 전파한다.

2. 경보단계

가. 즉시 경보단계가 선포되었음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및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나. 새로운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관련 긴급구조기관과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한다.

다. 항공기의 계획된 항로, 기상, 지형, 통신 가능지역, 최종확인지점, 무전교신 등의 전반적 분석을 실시한다.

라. 항공기가 출발 후 비행으로 연료고갈 시간을 추정하고, 악기상하의 항공기 성능을 검토한다.

마. 항공기 위치 확인이 안 되

었거나 연료고갈, 항공기와 탑승자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난단계로 진행한다. 다만, 항공기가 사고상태에 있지 않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는 상황을 종료하고, 관련기관에 전파한다.

3. 조난단계

- 가.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조난단계가 선포되었음을 통보하고, 수색·구조운영계획에 의한 수색·구조활동 개시
- 나. 필요시 긴급구조지원기관(국방부, 경찰청, 산림청 등)의 수색·구조를 요청
- 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한다.
- 라. 필요한 경우 인접국가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
- 마. 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당해 지역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

제23조(소재가 불명확한 항공기의
수색·구조) 본부장은 사고항공
기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구조조정본부 관할
지역에 걸친 사고의 경우 제27
조에 따라 수색·구조구역을 조
정하여 수색·구조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예비정보) 구조조정본부는
수색·구조구역에 대하여 항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1. 수색·구조에 활용되는 통신
수단
2. 수색·구조대의 위치 및 연
락망
3.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무선
국 위치 및 호출부호, 주파수
4. 수색·구조에 필요한 의료시
설 및 구호시설 등
5. 투하 가능한 비상생존장비의
저장위치

제25조(정보제공) ① 구조조정본
부는 수색·구조활동 정보가 당
해 항공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항공기와 통신이 가능한 항공교

제23조(소재가 불명확한 항공기의
수색·구조) 구조조정본부장--

----- 조난사고의 경우 제
7조-----

<삭 제>

제25조(정보제공) 구조조정본부는
수색·구조업무 정보가 조난사
고에 처한 항공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항공기와 통신이 가능한

통업무기관에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사고를 목격한 다른 항공기의 기장은 가능한 현장을 계속 주시하면서 구조조정본부 또는 관할 관제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항공기의 위치 확인(지리적 위치)

2. 사고 항공기의 기종, 호출부호, 상태

3. 목격시간

4. 목격된 사람의 수

5. 현지 기상상태

6. 생존자의 신체상태(부상정도)

7. 사고지점의 지상접근로

8. 그 밖에 구조조정본부의 지시에 따른 사항

③ 사고현장에 수색·구조항공기보다 먼저 도착한 항공기는 수색·구조항공기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활동을 책임지고 실시하되, 구조조정본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통신을 유지하여 제2항의 사고 항공기 정보를

ASAC 또는 정보소에 필요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비상단계 종료) ① 본부장은 사고항공기 및 생존자들의 위치가 확인되어 모두 구조되었을 때 또는 사고의 상태에 있지 않거나 사고항공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통보 받거나 확인된 경우 비상단계를 해제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수색·구조를 위한 기상조건 등 구조노력의 한계가 있을 경우, 또는 중요한 새로운 정보나 단서들이 밝혀지면 평가 및 검토를 거쳐 수색활동의 일시정지 및 재개를 할 수 있으며, 수색·구조에 의해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27조(수색·구조구역) ①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위한 수색·구조구역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의 육상이며,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구역은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각 소방본부 관할 구역 내에서 수색·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것

제26조(수색·구조업무 종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 제10항을 적용한다.

<삭 제>

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상상황 시 본부장은 조난 단계가 선포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색·구조구역을 지정하여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핵심구역 : 항공기 사고 및 사고추정지역

가. 위성수색·구조단말기에 의하여 사고지점으로 위치가 확인된 지역

나. 항공기의 위치가 최종 보고된 지역

다. 무선통신이 불가할 경우 항공기 도착예정지역

라. 항공기의 최종 보고된 위치가 2개의 수색·구조구역 경계선에 있을 경우에는 항공기 이동방향지역

2. 관심구역 : 핵심구역의 외곽 지역으로 핵심구역에 인접한 다른 지역구조조정본부의 관할구역

제28조(인접지역 사고인지 시 조치) 지역구조조정본부는 인접 수색·구조구역에서 발생한 항

제28조(인접지역 사고인지 시 조치) -----
----- 항

공기의 추락·실종 등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사고지역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와 구조조정
본부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통
보하여야 한다.

제29조(수색·구조기관간 협조)

①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
정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수상에서의 수색·구
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긴
급구조지원기관 등으로부터 협
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② 다른 수색·구조 관련기관과
수색·구조 민간단체도 수색·
구조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필
요 시 사전 협정서를 체결하여
시설사용, 훈련 등에 협조하여
야 한다.

제30조(수색·구조대) ① 항공기
사고발생시 수색·구조대는 중
앙119구조본부 권역별 119특수
구조대 및 각 소방본부·소방서
의 119구조·구급대로 구성하
되, 필요시 기타 소방력으로 지

공기 조난사고 신고 -----
----- 관할 -----

-----.

제29조(유관기관 간 협조) 수색·

구조 업무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51조, 「119구조·구급
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
조를 적용한다.

제30조(수색·구조대 편성) ①항
공기 조난사고 발생시 수색·구
조대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
조지원기관으로 편성하며,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
조를 적용한다.

원할 수 있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수색·구조대가 지원 시에는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관이 수색·구조구역을 조정하여 할당한다.

③ 비인가 수색·구조대가 수색·구조지원을 할 경우에는 수색·구조구역 내 관할 수색·구조대의 통제 하에 운용하도록 하며 수색·구조대 상호간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31조(수색·구조항공기) ① 긴급구조기관의 항공기는 신호추적장치(Homing)를 구비하고, 사고항공기와 교신이 가능한 비상주파수와 사고현장에서 지정 가능한 다른 주파수와도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색·구조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색·구조항공기에 구비할 장비와 물품 보유기준은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제3절 수색·구조지원 업무

제32조(수색·구조지원) ① 구조조정본부는 수색·구조지원을 위한 시설과 적절한 비상식량,

<삭 제>

<삭 제>

제31조(수색·구조항공기 장비)

① 수색·구조 -----

조난사고 항공기-----

-----.

② 수색·구조업무-----

별표 4 및 별표 5-----.

<삭 제>

제32조(수색·구조 자원)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

의료품, 신호장비 등 수색·구조 및 구호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의 현황을 유지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119 특수구조대 및 소방본부 항공구조구급대는 수색·구조항공기에서 투하할 수 있도록 포장된 생존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항공구조구급대별 생존장비의 최신 현황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수색·구조 통신) ①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는 긴급구조 관련기관과의 즉각적인 연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유·무선 통신을 갖추어야 한다.

1. 유선망

가. 제19조제3항에 따른 직통전화(별표 11 통신망도)

나. 위성수색·구조단말기(구조조정본부에 한한다)

다. 항공고정통신망(구조조정본부에 한한다)

라. 팩시밀리

마. 일반전화

본법」 제34조를 운용한다.

제33조(수색·구조 통신) <삭제>

바. 인터넷통신망

2. 무선망

가. 비상공지통신망(구조조정
본부에 한한다)

나. 소방통신망(UHF)

다. 소방항공통신망(VHF)

라. TRS무선망

마. 무선전화

바. 위성전화기

사. 그 밖에 필요한 무선망

② 제1항의 통신망의 정상적인
상태유지를 위한 점검을 매일 1
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유지 한
다.

③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
· 구조대 및 항공기가 운용하는
무선망은 별표 8 비상용 공지통
신 주파수(수색·구조주파수)와
같다.

제34조(수색·구조에 사용되는 신
호) ①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
공기는 수색·구조에 사용되는
신호방법(국제신호규약)을 휴대
하여야 하며, 수색·구조신호는
별표 12와 같다.

<삭 제>

----- 별표 6 -----
-- 주파수-----

제34조(수색·구조에 사용되는 신
호) ① -----

신호를 -----

별표 7-----.

②·③ (생략)

제35조(기록 유지) ① 본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항공기의 사고 발생 시부터 수색·구조 종료 시 까지 모든 진행상황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기록을 바탕으로 비상단계, 수색·구조활동, 장비사용 및 절차,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시 제2항의 평가보고서를 국제민간항공기구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업무

제36조(감독활동의 구분) ① 안전 감독관의 감독활동은 정기감독, 확인감독, 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점검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1.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등 운영에 대한 사항
2. 직무기술서의 타당성여부
3. 인적요인(Human Factor) 운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용 여부

4. 수색·구조대원에 대한 교육

실적 및 훈련수준 확인

5. 그 밖에 수색·구조업무 전

반에 관한 사항

③ 확인감독은 정기감독에 따른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당해 분
야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 특별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독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
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사항

2. 그 밖에 소방청장이 수색·
구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7조(연간감독계획의 수립) ①

안전감독관은 매년 12월까지 다
음 연도의 항공기사고수색·구
조분야의 연간감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감독의 목적 및 필요성

<삭 제>

2. 감독대상기관 및 점검내용

3. 감독의 종류 및 점검기간

4. 그 밖의 감독업무수행에 필요
요한 사항

제38조(감독방법 및 주기) ① 감독은 실지감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독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감독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정기감독은 별표 14에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제39조(감독의 실시) ① 안전감독관은 제37조의 연간감독계획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정기 감독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감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대상기관의 장에게 감독일정, 감독범위 및 안전감독관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감독 또는 특별감독의 경우에는 감독실시의 사전통지를 하지

<삭 제>

<삭 제>

아니할 수 있다.

③ 안전감독관은 감독활동 시 소방청장이 발행한 별지 3-1호 서식의 감독활동 명령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법령·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확인서 등의 제출 요구

2.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색·구조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3. 관계직원에 대한 출석, 진술

4.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

5. 기타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40조(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① 안전감독관은 제39조에 따른 감독결과 지적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독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5호 서식 시정지시/개선권고

<삭 제>

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 권고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지시, 개선 권고,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1.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선권고 : 규정에는 없지만 보다 나은 수색·구조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3. 현장시정 : 경미한 것으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③ 안전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경우 감독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시정 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확인감독을 실시하고,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 권고서를 발부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감독결과의 보고) ① 안전

<삭 제>

감독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감독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지적사항, 조치사항, 개선권고사항, 건의 및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안전감독관은 제1항의 감독결과를 해당 기관(부서)에 통보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조치결과 보고 및 확

<삭 제>

인) ① 수검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시 제41조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에 명시된 처리기한이 15일을 초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독관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평가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수

행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훈련

제1절 직무교육훈련

<신 설>

제42조(직무교육훈련의 구분) 안
전감독관 및 구조조정본부, 지역구조조정본부 소속 직원은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기본교육(Initial Training) :

신규보직자에게 수색·구조업무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교육하여 직무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 :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소관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숙달시키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실시

<삭 제>

<삭 제>

제4장 교육훈련 및 안전감독

제42조(교육대상 및 내용) 수색·

구조업무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RCC 및 RSC 담당자 : 수색

· 구조업무의 초기대응에 대한 직무교육

2. 수색·구조대 : 현장에서 수

색·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대원에 대한 직무교육

3. 수색·구조 항공기 : 국제민

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구조)의 수색구조 비상통신, 수색·구조 신호, 수색구조 방법에 대한 교육

하는 교육훈련

3. 직무교육(OJT : On the Job Training) : 안전감독관 및 구조조정본부, 지역구조조정본부별로 담당업무에 대한 임무수행절차를 선임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43조(교육훈련계획) ① 소방청장은 제42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교육훈련계획을 매년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소요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교육계획 외에 추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교육과정 및 대상) ① 제42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담당 직무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각 분야에 공통되거나, 유사한 교

제43조(교육계획 및 방법) ① 제42조의 제1호의 직무교육은 별표 8에 따라 수립 하며, 제2호 및 제3호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교육방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삭 제>

육훈련은 교육대상을 구분하지
아니 하고,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감독관교육 : 선임감독
관, 감독관

2. 관리자교육 : 임무조정관, 임
무담당관

3. 운용자교육 :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
당자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
육훈련의 전문성 제고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훈련 대상을 세분할 수 있
다.

제45조(교육훈련방법) ① 교육훈
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에 의하되, 집합교육, 위탁교육,
자체소집교육, 구두교육, 실무
실습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방
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1. 기본교육(IT) : 집합교육, 위
탁교육, 자체소집교육

2. 정기교육(RT) : 집합교육, 위
탁교육, 자체소집교육

3. 직무교육(OJT) : 자체소집교

<삭 제>

육, 구두교육, 실무실습교육

② 각 기관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간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별표 15의 교육훈련과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교육은 2주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나, 정기교육과 직무교육은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평가) ① 기본 및 정기교육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평가, 실기평가(보고서, 연구과제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본 및 정기교육의 교육훈련 실적은 소속기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 및 유지한다.

제2절 수색·구조훈련

제47조(수색·구조훈련의 구분)

① 본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삭 제>

<삭 제>

제47조(수색·구조훈련의 구분)

①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

-- 훈련-----

----.

1. · 2. (생략)

3. 합동수색·구조훈련

<신설>

4. (생략)

② 본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국내·외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주관하는 수색·구조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제48조(상황전파훈련) ① 항공기 사고에 대비한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의 직무기술서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 임무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황전파훈련을 메시지 전달 또는 유·무선 통신망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훈련은 임무조정관 및 임무담당관의 통제 하 매월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③ 제1항의 훈련 평가결과에 따라 임무조정관은 지역구조조정 본부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4. 수색·구조 대비 훈련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

제48조(상황전파훈련) ① -----
조난사고 시 -----

--- 임무를 숙지하기 -----

----- 통신망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결
과를 기록·유지한다.

<삭제>

<삭제>

제48조의2(도상 훈련)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는 항공기 사고에 대비하여 관할 지역을 숙지하고, 항공기 수색·구조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하여 임무조정관 또는 임무담당관의 통제 하 반기 1회 이상 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49조(합동수색·구조훈련)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6 제1항 제3호에 의거 항공기 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합동 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2(도상 훈련) 관할 지역 및 항공기 수색·구조 절차----

----- 반
기 -----

-----.

<삭 제>

제50조(수색·구조 대비 훈련) 항공기 조난사고에 대비한 수색·구조 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제49조 및 중앙 및 시·도 본부의 항공사고 관련

제50조(항공기 사고수습훈련) ①

각 공항을 관할하는 공항관리공
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항공기
사고수습 대비훈련 중 1회 이상
은 구조조정본부 및 관할 지역
구조조정본부와 연계한 합동훈
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조조정본
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는 훈련
기관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조하고, 훈련에 참가
규모와 훈련방법 등을 훈련참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51조(평가) ① 수색·구조훈련

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기록
· 유지한다.

② 임무조정관 또는 임무담당관
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소방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훈련에 참여 시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49조(항공기 사고수습훈련) 공

항에서 실시하는 항공기 사고수
습 대비훈련과 연계한 합동훈련
을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평가)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결과에 대
한 평가서를 작성·유지한다.

제51조의2(안전감독 및 평가) ①

구조조정본부의 안전감독은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

제6장 국가 간 협조

<신 설>

제52조(외국 수색·구조항공기의
진입) 수색·구조 구역 내에 외
국 국적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
한 경우 당사국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가 수색·
구조 구역 내에 진입허가를 요
청한 때에는 항공수색·구조지
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
고,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
다.

관 운영 규칙」을 따른다

②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안전점
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조조정
본부장이 정한다.

③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
항공기에 대한 평가는 「119구
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6
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행 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계획 및 결
과에 관한 사항은 ICAO 국제평
가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삭 제>

제5장 국가 간 협조

<삭 제>

제53조(수색·구조 지원요청에 대한 협조)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서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원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제54조(인접 관할구역에서의 항공기 사고 상황 인지 시 조치) ① 본부장은 인접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의 추락·실종 등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또는 인접 국가의 구조조정본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우리나라 국적항공기가 인접국 수색·구조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하여 수색·구조대를 파견할 경우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 파견내용을 통보한다.

제55조(국제협력증진) ① 본부장은 필요시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 방문을 통하여 수색·구조지

<삭 제>

<삭 제>

제55조(국제협력증진) ① 구조조정본부장-----
----- 수색·구조업

원업무 발전 및 협력체계구축
등을 위한 국제교류를 할 수 있
다.

② 소방청장은 국제민간항공조
약 부속서 12(수색·구조)의 제
· 개정안에 대해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와 의 협
의 과정을 거쳐 검토 후 국내규
정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신 설>

제7장 보칙

<신 설>

제56조(관련 규정의 준용) 이 규
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
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

무 -----

--.

② 구조조정본부장-----

-----.

제55조의2(국제기준 차이점 통보)
국제기준과 국내규정 간의 내용
· 성격 등 서로 다른 경우 「국
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
무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에 따라 조치한다.

<삭 제>

제6장 보칙

제56조(관련 규정의 준용) -----

----- 법령을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4.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삭 제>

<u>에 관한 법률」</u> 5. <u>국제항공해양 수색 및 구조 매뉴얼(IAMSAR)</u> 6. <u>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국토교통부 고시)</u> 7. <u>국제조난 및 안전통신 운용 규칙</u> 8. <u>항행분야 국제 업무 처리지침</u> 9. <u>그밖에</u>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서 정한 관련 국제규정 등 제5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 령에 대하여 <u>2022년 1월 1일</u>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u>12월 31일</u>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u>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 획</u>」(항공교통본부고시) 6. 「<u>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 영 규칙</u>」(해양경찰청훈령) 7. 「<u>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 침</u>」(국토교통부훈령) <u><삭 제></u> 8. <u>그 밖</u>----- -- 제57조(재검토기한) ----- ----- ----- ----- <u>2025년 7월 1일</u>----- ----- ----- <u>6월 30일</u>----- ----- ----- -----.
---	--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난사고(Distress Accident)”란 항공기가 불시착 및 추락 등으로 위험에 처해 구조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 “수색(Search)”이란 조난을 당한 항공기 및 사람의 위치파악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조(Rescue)”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를 말한다.

3의2. 삭제

4. “수색·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란 항공기, 선박, 기타시설을 포함한 공공 및 개인 자원을 사용하여 수색·구조, 응급 의료 지원, 후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란 우리나라 육상에서 항공기 조난사고 시 수색·구조업무를 조정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지역구조조정본부(Rescue Subcenter)”란 수색·구조구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7. 삭제
8.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 : ASAC)(이하“ASAC)”란 「항공안전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항공교통본부)을 말한다.
9. “경보소(Alerting Post)”란 실종 또는 조난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획득을 위해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10. 삭제
11. 삭제
12. “수색·구조대(Search and rescue unit)”란 수색·구조업무를 위하여 훈련된 인력과 적합한 장비를 갖춘 조직을 말한다.
13. “수색·구조항공기(Search and rescue aircraft)”란 효율적인 수색·구조업무를 위한 적합한 특수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14. “수색·구조구역(Search and Rescue Region)”이란 수색·구조업무가 제공되는 일정한 범위의 구역으로 구조조정본부에서 지정한다.

15. 삭제
16. “위성조난시스템”이란 LUT(Local User Terminal) 및 MCC(Mission Control Center) 시스템 등을 갖추고 위성을 통한 조난신호를 수신 및 처리, 전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7. “수색·구조 단말기”란 위성조난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18. 삭제
19. 삭제
20.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 경보상황(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istress phase)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하여, 세부내용은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를 따른다.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제2장 조직 및 임무 등

제4조(구조조정본부의 구성)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구조업무를 위해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위하여 소방청에 구조조정본부를 둔다.

제5조(구조조정본부의 조직) 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장이 된다.

제6조(구조조정본부의 임무) ① 구조조정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항공기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별 조치
3. 삭제
4. 수색·구조업무 조정 및 통제
5. ASAC과 수색·구조업무 및 사고지역 공역통제,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 등에 관한 사항 협의
6. ASAC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7. 수색·구조업무의 중단 및 재개 사항 접수 및 전파
8. 삭제

9. 수색·구조단말기 검색 및 조난신호 확인

10. 비상상황 발생관련 기록유지

② 삭제

③ 삭제

제6조의2(구조조정본부의 운영) ① 구조조정본부는 효율적인 수색·구

조 업무를 위하여 24시간 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구조조정본부에는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및 영어에 능숙 하고, 수색·구조업무 수행이 가능한 별표 1의 자격을 갖춘자를 두어야 한다.

③ 구조조정본부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의 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수단

가. 지역구조조정본부, ASAC, 정보소

나. 해양경찰청(상황실)

다. 국방부 탐색구조본부

라. 공군 중앙방공관제소(MCRC)

마. 육군 항공사령부 지휘통제실

바. 경찰청 상황실

사. 기상청 예보실

아. 삭제

2. 삭제

3. 삭제

4. 수색·구조 관련기관의 최신 연락처 및 필요한 정보

5. 수색·구조와 관련된 법령,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

6. 삭제

제6조의3(수색·구조단말기 운용) ① 구조조정본부는 육상에서의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수신 및 분석하기 위하여 수색·구조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수색·구조단말기가 점검 및 정비 등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협조하여 신속한 경보 접수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색·구조단말기에서 조난신호를 식별하게 되면 수신지역 및 조난신호를 발신한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ASAC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한다.

④ 구조조정본부장은 별표 2의 위성조난신호 처리 기준에 따라 별지 1호 서식의 위성조난신호 수신 및 처리 실적 통계를 관리한다.

제7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구성) 수색·구조구역 내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지원하고, 해당 관할 지역 내에서 수색·구조업무를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의 소방본부를 지역구조조정본부로 지정한다.

1. 삭제

2. 삭제

제8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조직) 지역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은 시·도
119종합상황실장이 된다.

제9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임무) ①지역구조조정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비상상황 접수 시 관할 경보소에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결과를 구조조정본부에 통보
3. 수색·구조구역 내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4. 비상상황 발생관련 기록유지
5. 그 밖에 구조조정본부의 요구사항에 협조

② 삭제

③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제6조의3으로 통합

제15조 제6조의3으로 통합

제16조 제6조의3으로 통합

제17조 제6조의3으로 통합

제3장 수색 · 구조 운영 절차

제18조 삭제

제18조의2(수색 · 구조 체계) 항공기 조난사고 시 수색 · 구조 체계는 별표 3과 같다

제19조(제6조의2로 이동)

제20조(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입수 시 조치) ① 삭제

② 구조조정본부에서 접수되는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수신한 비상상황 정보
2. ASAC, 경보소로부터 수신한 비상상황 정보
3. 위성수색 · 구조단말기로부터 조난신호를 수신하여 항공기 조난사고가 의심되는 정보
4. 119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5.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를 접수한 구조조정본부는 접수 즉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평가하고, 요구되는 활동범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조난신호 발생지역을 확인
2.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조난신호 검색여부 재확인
3. ASAC, 경보소에 항공기 이상 유무를 확인
4. 그 밖의 정보수집

제21조(비상상황 판단) 구조조정본부는 제20조제2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입수 시 비상상황을 판단하고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제22조(비상상황별 조치) 구조조정본부는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비상상황 접수 및 제21조에 따른 비상상황 판단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상황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 : ASAC, 경보소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2. 경보상황 :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수색구조대에 관련정보 제공 및 출동준비 등의 필요한 조치
3. 조난상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수색·구조업무 실시

나. ASAC, 해양경찰청 상황실, 지역구조조정본부에 비상상황 통보
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

제23조(소재가 불명확한 항공기의 수색·구조) 구조조정본부장은 사고항공기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구조조정본부 관할 지역에 걸친 조난사고의 경우 제7조에 따라 수색·구조구역을 조정하여 수색·구조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제25조(정보제공) 구조조정본부는 수색·구조업무 정보가 조난사고에 처한 항공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항공기와 통신이 가능한 ASAC 또는

경보소에 필요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수색·구조업무 종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10항을 적용한다.

제27조 삭제

제28조(인접지역 사고인지 시 조치) 지역구조조정본부는 인접 수색·구조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 조난사고 신고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와 구조조정본부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유관기관 간 협조) 수색·구조 업무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를 적용한다.

제30조(수색·구조대 편성) ①항공기 조난사고 발생시 수색·구조대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편성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31조(수색·구조항공기 장비) ① 수색·구조 항공기는 신호추적장치(Homing)를 구비하고, 조난사고 항공기와 교신이 가능한 비상주파수와 사고현장에서 지정 가능한 다른 주파수와도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색·구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색·구조항공기에 구비할

장비와 물품 보유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5과 같다.

제32조(수색·구조 자원)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를 운용한다.

제33조(수색·구조 통신)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 및 항공기가 운용하는 무선망은 별표 6 비상용 공지통신 주파수와 같다.

제34조(수색·구조에 사용되는 신호) ①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는 수색·구조에 사용되는 신호를 휴대하여야 하며, 수색·구조신호는 별표 7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호는 지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혼동될 우려가 있는 신호는 사용하지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호를 목격한 항공기는 신호의 의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1조의2 삭제

제4장 교육훈련 및 안전감독

제42조(교육대상 및 내용) 수색·구조업무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RCC 및 RSC 담당자 : 수색·구조업무의 초기대응에 대한 직무교육
2. 수색·구조대 : 현장에서 수색·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대원에 대한 직무교육
3. 수색·구조 항공기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구조)의 수색구조 비상통신, 수색·구조 신호, 수색구조 방법에 대한 교육

제43조(교육계획 및 방법) ① 제42조의 제1호의 직무교육은 별표 8에 따라 수립 하며, 제2호 및 제3호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교육방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수색·구조훈련의 구분) ①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는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황전파훈련(메세지훈련)

2. 도상훈련

3. 항공기 사고수습훈련

4. 수색·구조 대비 훈련

②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은 국내·외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주관하는 수색·구조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제48조(상황전파훈련) ① 항공기 조난사고 시 절차에 의한 임무를 숙지하기 위하여 상황전파훈련을 메시지전달 또는 유·무선 통신망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48조의2(도상 훈련) 관할 지역 및 항공기 수색·구조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49조(항공기 사고수습훈련) 공항에서 실시하는 항공기 사고수습 대비훈련과 연계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수색·구조 대비 훈련) 항공기 조난사고에 대비한 수색·구조 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제49조 및 중앙 및 시·도 본부의 항공사고 관련 훈련에 참여 시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1조(평가)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유지한다.

- 제51조의2(안전감독 및 평가)** ① 구조조정본부의 안전감독은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을 따른다
- ②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조조정본부장이 정한다.
- ③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에 대한 평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은 ICAO 국제평가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5장 국가 간 협조

제52조 삭제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 제55조(국제협력증진)** ① 구조조정본부장은 필요시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 방문을 통하여 수색·구조업무 발전 및 협력체계구축 등을 위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다.
- ② 구조조정본부장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구조)의 제·개정안에 대해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검토 후 국내규정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제55조의2(국제기준 차이점 통보) 국제기준과 국내규정 간의 내용·성

격 등 서로 다른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6장 보칙

제56조(관련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적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3. 「소방기본법」
4. 「항공안전법」
5.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
6.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해양경찰청훈령)
7.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8.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관련 국제규정 등

제5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조조정본부 ·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의 자격(제6조의2 관련)

구 분	자 격 조 건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무선통신자격증이 있거나 무선통신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영어소통이 가능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자 - 항공운항관제업무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상황실근무요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구조조정본부장이 능력을 인정하여 지정한자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무선통신자격증이 있거나 무선통신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자 - 구조·구급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상황실근무요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지역구조본부장이 능력을 인정하여 지정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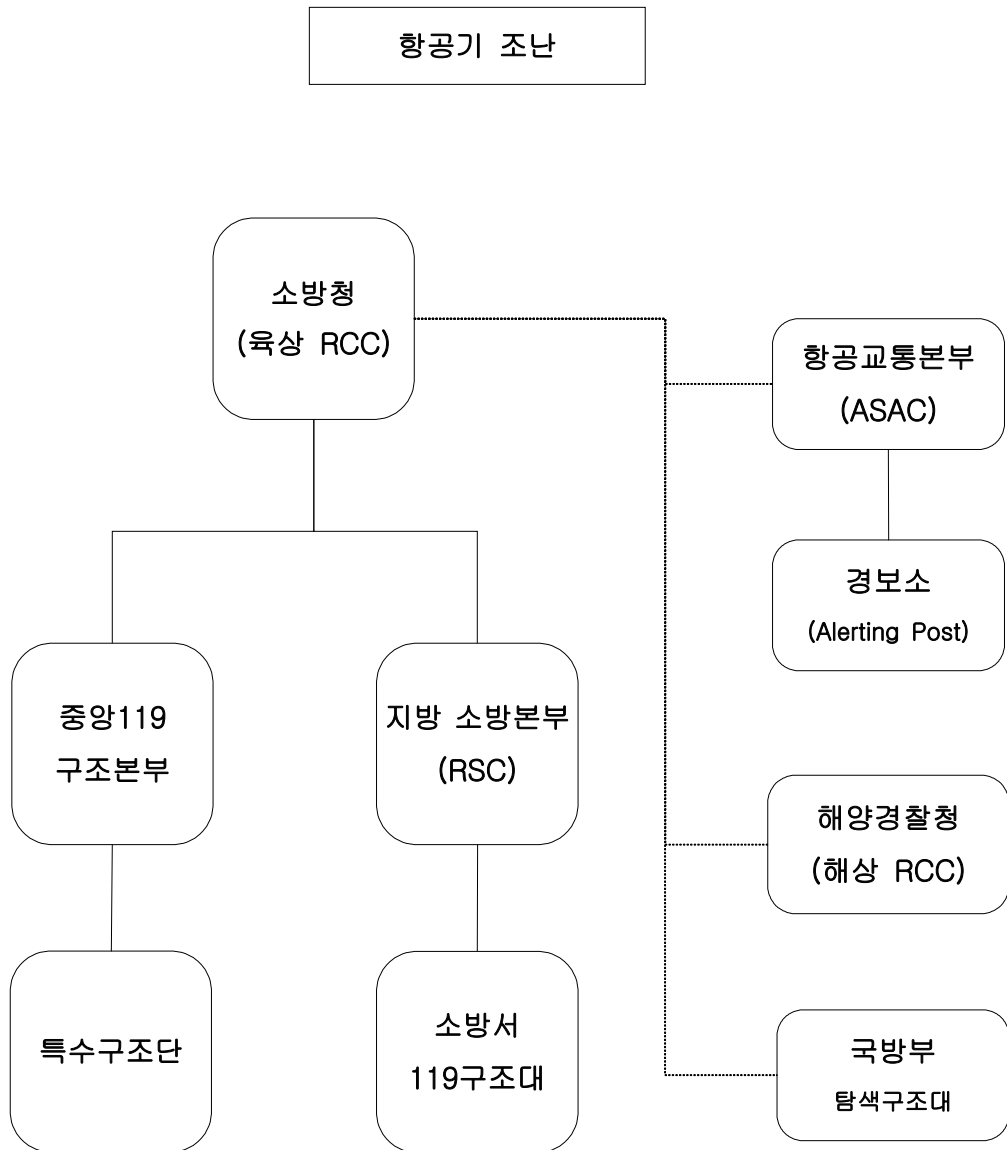
[별표 2]

위성조난신호 수신 처리 구분(제6조의3 관련)

구분		기준	비고
실제 조난신호		○ “조난사고”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항공기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여 조난 신호를 발신한 경우	
시험발신 신호		○ 정비 및 시험운용 ○ 수색구조 훈련을 위해 발신한 경우	
오발신 신호	취급부주의	○ 부적절한 장비 설치 및 위치 ○ 부적절한 유지보수 ○ 위성조난신호기의 부적절한 신호발신 ○ 부적절한 장비 폐기	
	기기 오작동	○ 스위치 오작동 ○ 해수유입 ○ 테스트 모드 중 신호 발신 ○ 장비 고장(Non-GPS)	
	설치 부주의	○ 보관함 고장 ○ 자동 이탈장치 고장 ○ 항공기 외부 설치된 ELT 스위치 고장	
	기상요인	○ 극심한 기상여건 : 태풍, 파도 등	
	자가발신	○ 사전 미통보 테스트 ○ 고의 발신	
	원인미상	○ 신호 발신의 원인 파악 불가	

[별표 3]

항공기 조난사고 시 수색구조 체계(제18조의2 관련)



[별표 4]

수색 · 구조항공기 탑재장비(제31조 관련)

순번	장 비 명	단위	수량	비 고
1	구조용 탐색장비 (SAR DF)	대당	1 세트	비상신호 Homing용
2	구조인양기 (Rescue Hoist)	대당	1 세트	
3	응급의료장비 (EMS kit)	대당	1 세트	이동들것 포함
4	통신장비 (Radio equipment)	대당	2 세트	
5	탐조등 (Search Light)	대당	1 세트	
6	확성기 (Loudspeaker)	대당	1 세트	
7	디지털 캠코더 (Digital Camcorder)	대당	1 세트	현장 영상촬영용 (고정 또는 이동형)
8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 (ELT)	대당	1 세트	

[별표 5]

수색 · 구조항공기 구조용 물품(제31조 관련)

순번	장 비 명	단위	수량	비고
1	팽창식 구명보트 (Inflatable liferaft)	대당	2세트	기종별 최대탑승기준 (4~12인용)
2	구명자켓 (Life jackets)	대당	1 세트	기종별 최대탑승기준
3	생존 보호복 (Survival suits)	대당	1 세트	기종별 최대탑승기준
4	구명부위 (life buoy)	대당	1 세트	기종별 최대탑승기준
5	휴대용 무전기(VHF) (Portable VHF Radios comm')	대당	2세트	SAR 투하 비상통신용
6	구조 바스켓 (Rescue baskets)	대당	1 세트	Basket, Sling, Net, Litter, Seat 등
7	생존장비 (Survival equipment)	대당	2세트	투하용
8	휴대용 소화기 (Portable extinguisher)	대당	2세트	
9	신호장비 (Signalling equipment)	대당	1 세트	불꽃조난신호장비 등
10	구급의료용품 (Medical kit)	대당	1 세트	구급용품 및 의약품
11	쌍안경 (Binoculars)	대당	2세트	

[별표 6]

비상용 공지통신 주파수(제33조 관련)

구 분	주 파 수
VHF *	126.90MHz
UHF *	250.80MHz, 317.55MHz
비상주파수 *	121.50MHz, 243.00MHz
수색·구조 주파수	122.0MHz, 127.8MHz

* 무전교신은 조난사고 항공기에 대하여 통신탐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ASAC)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별표 7]

수색 · 구조 신호(제34조 관련)

1. 수상선박에 대한 신호

1.1 항공기가 수상선박을 조난당한 항공기 또는 선박 쪽으로 직접 유도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나타낼 경우 다음 순서로 기동하여야 한다.

가. 1회 이상 수상선박 주위 상공을 선회한다.

나. 저고도에서 앞쪽으로 접근하여 수상 선박의 진행예정코스를 횡단한다.

(1) 날개를 흔든다.

(2) 스로틀을 개폐한다.

(3) 프로펠러 피치를 변경한다.

주 1. 수상선박의 소음으로 인하여 (2)와 (3)의 방법이 (1)의 방법보다 효과가 적다고 판단 할 때는 (2)와 (3)의 방법은 주위를 끌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사용된다.

다. 수상선박을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수를 조정한다.

1.2 수상선박의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는 저고도에서 후미로 접근하여 수상선박의 항적을 횡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동하여야 한다.

가. 날개를 흔든다.

나. 스로틀을 개폐한다.

다. 프로펠러 피치를 변경한다.

1.3 수상 선박은 1.1항 및 1.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신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응신하여야 한다.

1.1.1.1. 가. 신호를 수신했음을 나타낼 경우

1.1.1.1.1. 신호 깃발(수직의 적색 및 백색 띠)을 게양(이해하였음을 의미)

1.1.1.1.2. 신호등을 점멸시켜 모스 부호 “T”를 연속적으로 표시

1.1.1.1.3. 항공기를 따라가기 위하여 선수를 변경

1.1.1.2. 나. 이행이 불가능함을 표시할 경우

1.1.1.2.1. 국제깃발 “N” (청색 및 백색 바둑판무늬의 정사각형)을 게양

1.1.1.2.2. 신호등을 점멸시켜 모스 부호 “N”을 연속적으로 표시

2. 지대공 시각신호

2.1 생존자가 사용하는 지대공 시각신호

번호	의미	기호
1	지원이 필요함	V
2	의료 지원이 필요함	X
3	아니오 또는 부정	N
4	예 또는 긍정	Y
5	화살표방향으로 진행	↑

2.2 구조대가 사용하는 지대공 시각신호

번호	의미	기호
1	활동완료	LLL
2	사람을 모두 발견하였음	<u>LL</u>
3	일부 사람만 발견하였음	++
4	우리는 더 계속 진행할 수 없음. 기지로 귀환하고 있음	XX
5	두 그룹으로 나누었음. 각각 표시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	
6	항공기가 화살표 방향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음	→ →
7	발견사항 없음, 수색을 계속할 것임	NN

2.3 기호의 길이는 2.5미터(8피트) 이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눈에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주1. 기호는 긴 천, 낙하산, 나뭇조각, 바위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이용하거나 또는 지표면을 밟아 표시하거나 기름으로 얼룩을 만드는 등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표시할 수 있다.

주2. 위의 신호에 대한 주의를 끌기 위하여 전파, 조명탄, 연기, 빛의 반사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공대지 신호

3.1 항공기가 지상의 신호를 이해하였을 경우 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기동하여야 한다.

가. 주간에는 항공기의 날개를 흔든다.

나. 어두울 때에는 항공기의 착륙등을 2회 점멸하거나 착륙등이 없을 경우 항행등의 스위치를 2회 점멸한다.

3.2 위의 신호가 없다는 것은 지상신호가 이해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별표 8]

교육훈련과목(제43조 관련)

□ RCC 및 RSC(119종합상황실)

교과목	주요 내용	비고
1. 법령이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소방기본법 · 구조·구급 관련 법령	
2. 국제규정	· ICAO Annex12 · IMSAR Manual I, II, III	
3. 통신	· 유,무선 통신, 관제용어	
4. 항공정보	· 우리나라 공역체계(관제, 비관제, 특수공역) · 항공교통관제업무(관제시설 및 관제절차) · 비행정보업무(비행계획, 비행정보제공) · 항공정보업무(항공지도, AIP)	
5. 수색·구조 업무	· 수색·구조업무 개요 · 수색·구조업무기관 · 수색·구조구역 · 수색·구조업무절차 · 수색·구조장비/현황 · 상황보고절차	
6. 항공기상	· 항공기상 개요 ·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 · 기상현상 및 예보 · 항공기상 판독	
7. 위성수색·구조 단말기운용	· 위성수색·구조단말기 기능 및 사용법 · 위성수색·구조단말기 판독법(조난신호검색) ·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점검 및 정비절차	RCC만 해당